

1. 도면, 승인도
 2. 외주가공규격서, 공정표, 사용재료 명세서(BOM)
 3. 검사기준 및 규정된 규격(제품규격, 국방규격, License 규격 및 국가별 표준 등)
 4. 납품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해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 포함)
- ② 구매자는 공급자가 계약물품의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사양서류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발주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승인된 사양서류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양서류의 내용·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급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구매자에게 사양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제4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사양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구매자와 공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이미 제조된 계약물품)의 사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계약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계약물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9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납품시 납품 LOT에 대한 100% 검사성적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가 납품한 품목에 대해서 구매자는 검사규정에 따라 검사 후 결과를 공급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 통보한다
- ③ 공급자는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구매자가 요구한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자체 품질검사 강화 및 필요한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제공한 소재의 원인으로 인해 공급자가 가공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재로 1:1 교환한다.
- ④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생산관리·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물품 제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공정설비·생산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